

부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9월 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해양)

□ 제안이유

- 지방분권·행정혁신 등 시대적 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에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구청간 적정하게 배분하고 역할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시민편익의 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고
- 일부 불합리하게 배치된 부서 및 국·소 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세무부서 부과·징수기능의 구청이관 및 상하수도·녹지공원업무 분리 등에 따라 국·소·과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7조, 별표 1)
< 기 구 폐 지 >
 - 시본청 부과과, 징수과

< 명 칭 변 경 >

- 행정지원국 → 총무국
 - 기획세무국 → 기획재정국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 녹지공원관리사업소
 - 교통지도사업소 → 차량관리사업소
 - 정보관리과 → 정보통신과
- 국명칭변경 및 기능재조정에 따라 과단위 부서의 소속을 변경함.(안 제8조)
- 총무국 회계과 → 기획재정국 회계과
- 도시행정의 중심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과를 신설하고 기존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주차정책·주차시설업무를 담당함.(안 제11조)
- 주차단속·과태료부과 징수기능의 구청이관에 따라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 및 명칭변경하여 교통지도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던 차량행정 및 차량등록업무와 기존의 자동차관리, 방치차처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제17조제7호, 별표 1)
- 일부 비효율적인 과단위 분장사무를 재조정함.(안 제7조제2항)
- 총무과 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과
 - 주민자치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총무과
 - 주민자치과 민방위에 관한 사항 → 시민봉사과
- 행정자치부에서 2004. 6.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 폐지하는 대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 제 추진방침이 결정되고 이에 필요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을 2005. 6. 30일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항)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이번 조직개편이 1998년도 기구 개편 이후 조직에 대한 성과 평가를 가지고 하였는지 아니면 시장의 순수한 건의나 지시사항으로 진행되는 것인지?	○ 조직 운영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고 부서간 워크샵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조직개편에 대한 여론이나 의견들이 제시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세무업무가 시로 이관되면서 긍정적인면과 부정적인면이 있었다고 보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없는지?	○ 우선 세무비리가 근절되었고 복식 부기가 기초자치단체 최초의 발원지로서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 등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 세무업무가 구로 이관하여 체납율이 떨어지지 않고 세무비리처럼 세금부과가 잘못되어 공직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 세무직원들의 업무수준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과간 구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면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구청장이 주관하여 과감히 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기구개편이 세무직들의 불만속에서 기구개편이 이루어져서 체납율을 낮추는 것과 주민 행정서비스를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는지?	○ 일부 직원들이 구 이관에 따른 승진이나 근무여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나 열심히 하면 시나 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등을 통해 배려할 것입니다.
○ 조직개편도 필요로 하지만 세무직들의 근무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객관적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실시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 체납액 징수등 업무적인 성과평가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인사나 기타 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조직개편안을 보면 과나 팀이 신설되거나 합쳐지는 등 변경되면서 업무가 너무 과다하게 집중 되는 부서가 없는지? ○ 개편안의 건설교통국 교통시설과와 통행정과의 업무구분이 모호한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정원규정에 의하면 1국 4과, 1과 4팀, 1팀 4명이 적정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개편안이 규정에 맞게 된 것인지? ○ 녹지공원과가 공원관리사업소로 변경되고 인원을 2~3명 정도 보충한다고 하지만 늘어나는 공원을 관리하기에는 인원이 부족한데 이와 관련 보완방안은? ○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다른 사업소의 직급이 상이하므로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상하수도본부장으로 하면 어떤지? ○ 이번 조직개편의 이유가 조직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보완하고자 추진하는 것인지 시민의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에 비해 팀 숫자가 본청에 많이 집중되어 있고 팀장 1명에 직원 1명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져 이런 부서에 대해 과장이나 팀장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조직개편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 교통시설과는 교통시설에 대한 업무를 교통행정과는 주로 차량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 최대한 규정에 맞게 조정했으나 일부 안맞는 부분이 있는데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우선 정규직원으로 2~3명을 보충하고 비정규직 공원관리원을 대폭 보충할 계획입니다. ○ 도 단위는 본부장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시 단위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예전에 우리시가 본부장을 일시 사용하였다가 불합리하여 사용을 중단한 바 있음. ○ 세무업무의 구청 이관으로 세무관련 민원이 현재보다 편리해 질 수 있다고 판단되었고 조직운영에 다소 문제가 있어 보완코자 개편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조직개편안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번 조직개편에서 일부 불만이 있는 만큼 직원들을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행정의 효율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부응하는 조직으로 구축되도록 전 공직자가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4호
의결 년월일	2004. 9. 9 (제114회)

제출년월일 : 2004. 8. 25

제출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분권·행정혁신 등 시대적상황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청으로 집중된 행정조직 및 기능을 시·구청간 적절하게 배분하고 역할분담을 재조정함으로써 시민편익의 효율적 행정시스템으로 개편하는 한편,
- 일부 불합리하게 배치된 부서 및 국·소명칭을 기능에 적합하도록 재조정함으로써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세무부서 부과·징수기능의 구청이관 및 상하수도·녹지공원업무 분리등에 따라 국·소·과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2호,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17조, 별표 1)

< 기 구 폐 지 >

- 시분청 부과과, 징수과

< 명 칭 변 경 >

- 행정지원국 → 총무국
- 기획세무국 → 기획재정국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맑은물푸른숲사업소 녹지공원과 → 녹지공원관리사업소
- 교통지도사업소 → 차량관리사업소
- 정보관리과 → 정보통신과

나. 국명칭변경 및 기능재조정에 따라 과단위 부서의 소속을 변경함.(안 제8조)

- 총무국 회계과 → 기획재정국 회계과

다. 도시행정의 중심이며 민원발생이 많은 교통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시설과를 신설하고 기존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주차정책·주차시설업무를 담당함.(안 제11조)

라. 주차단속·과태료부과징수기능의 구청이관에 따라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 및 명칭변경하여 교통지도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이관하고, 시민봉사과에서 담당하던 차량행정 및 차량등록업무와 기존의 자동차관리, 방치차처리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제17조제7호, 별표 1)

마. 일부 비효율적인 과단위 분장사무를 재조정함.(안 제7조제2항)

- 총무과 여론관리에 관한 사항 → 주민자치과
- 주민자치과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 총무과
- 주민자치과 민방위에 관한 사항 → 시민봉사과

바. 행정자치부에서 2004. 6. 30일부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한시기구는 폐지하는 대신 자치조직권 확대의 일환으로 여유기구제 추진방침이 결정되고 이에 필요한 한시기구 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주민자치과의 설치기한을 2005. 6. 30일까지 연장함.(안 부칙 제2항)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청소사업소”를 “청소사업소, 녹지공원관리사업소”로, “교통지도사업소”를 “차량관리사업소”로 한다.

제5조중 “행정지원국, 기획세무국”을 “총무국, 기획재정국”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총무국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②총무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서·복무·인사·조직관리·교육·국제교류·행정서비스·후생 복지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시정시책·선거·여론관리, 생활환경정비·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3. 정보기획·지역정보·정보운영·통신에 관한 사항
4. 민원행정·생활민원·민방위·콜센터추진에 관한 사항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②기획재정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 행정의 종합기획·예산의 편성 및 집행·디지털재정·혁신분권·경영사업·심사분석·성과관리·의회협력·법무·통계에 관한 사항
2. 지방세전반에 관한 기획·세무조사·세외수입·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3. 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청사건축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유통·실업대책·공공근로·고용안정·노사협력·가스·에너지에 관한 사항

제10조제1항중 “환경위생과,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서민생활보호대책, 장애인복지,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중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로 하고, 동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계획·도시정비·지구단위 및 지적에 관한 사항
2. 도로시설·유지·관리 및 도로안전, 가로정비,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 교통기획, 교통지도, 운수에 관한 사항

4. 교통시설 및 주차정책,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

제17조제1호중 “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동호 라목 및 마목을 각각 삭제하며, 동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녹지공원관리사업소

가. 도시녹화 및 산림에 관한 사항

나. 공원조성 및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차량관리사업소

가. 차량행정·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나. 자동차관리 및 방치차처리에 관한 사항

조례 제1965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2항중 “행정지원국”을 “총무국”으로, “2004년 6월 30일”을 “2005년 6월 30일”로 한다.

별표 1의 기관명란중 “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를 “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로 하고, 동표의 부천시청소사업소란 다음에 부천시녹지공원관리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표의 기관명란중 “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를 “부천시차량관리사업소”로 한다.

기 관 명	소 재 지
부천시녹지공원관리사업소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56번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의 소속하에 두는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생 략)</p> <p>2. 사업소 : <u>맑은물푸른숲사업소</u>, <u>농산지원사업소</u>, <u>청소사업소</u>, <u>시립도서관</u>, <u>도시개발사업소</u>, <u>시설사업소</u>, <u>교통지도사업소</u></p> <p>3. (생 략)</p> <p>제5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지원국</u>, <u>기획세무국</u>, <u>경제문화국</u>, <u>복지환경국</u> 건설교통국을 둔다.</p> <p>제7조(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u>행정지원국</u>에 총무과, 회계과, 정보관리과, 시민봉사과, 주민자치과를 둔다. ②<u>행정지원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문서·복무·인사·시정시책·선거·조직관리·교육업무에 관한 사항</u></p> <p>2. <u>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청사건축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삭제</u></p> <p>4. <u>정보기획·지역정보·정보운영·통신에 관한 사항</u></p> <p>5. <u>민원행정 및 차량관리·등록에 관한 사항</u></p> <p>6. <u>주민자치·민간협력·민방위·국제교류에 관한 사항</u></p> <p>제8조(기획세무국에 두는 과) ①<u>기획세무국</u>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부과과, 징수과를 둔다. ②<u>기획세무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시 행정의 종합기획·예산의 편성 및 집행·법무·의회·경영사업·심사분석·목표관리·통계에 관한 사항</u></p> <p>2. <u>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평가심사·세무조사·세외수입에 관한 사항</u></p> <p>3. <u>취득세·등록세·면허세등 도세와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사항</u></p> <p>4. <u>주민세·재산세·종합토지세등 시세 부과에 관한 사항</u></p> <p>5. <u>지방세 체납관리·공매·체납처분등징수에관한사항</u></p>	<p>제2조(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상하수도사업소</u>----- <u>청소사업소</u>, <u>녹지공원관리사업소</u>----- -----, <u>차량관리사업소</u></p> <p>3. (현행과 같음)</p> <p>제5조(국의 설치) ①----- --<u>총무국</u>, <u>기획재정국</u>----- -----</p> <p>제7조(총무국에 두는 과) ①<u>총무국</u>에 총무과, 주민자치과, 정보통신과, 시민봉사과를 둔다. ②<u>총무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문서·복무·인사·조직관리·교육·국제교류·행정서비스·후생복지에 관한 사항</u></p> <p>2. <u>주민자치·시정시책·선거·여론관리·생활환경정비·민간협력에 관한 사항</u></p> <p>3. <u>정보기획·지역정보·정보운영·통신에 관한 사항</u></p> <p>4. <u>민원행정·생활민원·민방위·콜센터추진에 관한 사항</u></p> <p>제8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①<u>기획재정국</u>에 기획예산과, 세정과, 회계과를 둔다. ②<u>기획재정국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시 행정의 종합기획·예산의 편성 및 집행·디지털재정·혁신분권·경영사업·심사분석·성과관리·의회협력·법무·통계에 관한 사항</u></p> <p>2. <u>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세무조사·세외수입·수납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u></p> <p>3. <u>경리·계약·복식부기·재산관리·청사건축물유지관리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생략) ②경제문화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경제·유통·실업대책·공공근로·노정·가스·에너지에 관한 사항</u></p> <p>2 ~ 4. (생략)</p>	<p>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①(현행과 같음) ②-----</p> <p>1. <u>경제·유통·실업대책·공공근로·고용안정·노사협력·가스·에너지에 관한 사항</u></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10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복지환경국에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u>환경위생과, 체육청소년과</u>를 둔다. ②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서민생활 보호대책, 장애인에 관한 사항</u></p> <p>2. ~ 5. (생략)</p>	<p>제10조(복지환경국에 두는 과) ①----- -----<u>체육청소년과, 환경위생과</u>-----</p> <p>②-----</p> <p>1. <u>서민생활보호대책, 장애인복지·자원봉사에 관한 사항</u></p> <p>2. ~ 5. (현행과 같음)</p>
<p>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건설교통국에 도시과, 도로과, <u>교통행정과, 건축과</u>를 둔다. 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도시계획에 관한 사항</u></p> <p>2. <u>도로시설·유지·관리 및 도로안전에 관한 사항</u></p> <p>3. <u>교통행정에 관한 사항</u></p> <p>4. <u>공동주택·일반건축물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u></p>	<p>제11조(건설교통국에 두는 과) ①----- -----<u>교통행정과, 교통시설과</u>-----</p> <p>②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u>도시계획, 도시정비, 지구단위 및 지적에 관한 사항</u></p> <p>2. <u>도로시설·유지·관리 및 도로안전, 가로정비, 지하공간개발에 관한 사항</u></p> <p>3. <u>교통행정, 교통기획, 교통지도, 운수에 관한 사항</u></p> <p>4. <u>교통시설 및 주차정책, 주차시설에 관한 사항</u></p> <p>5. <u>공동주택, 일반건축물 등 건축물의 건축 및 안전에 관한 사항</u></p>

현행	개정안
<p>제17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u>맑은물푸른숲사업소</u> 가. ~ 다. (생략) 라. <u>도시녹화 및 산림에 관한 사항</u> 마. <u>공원조성 및 공원내 시설물 유지관리등에 관한 사항</u></p> <p>2. ~ 3. (생략) <u><신설></u></p> <p>4. ~ 6. (생략)</p> <p>7. <u>교통지도사업소</u> 가. <u>교통불편 신고사항 처리</u> 나. <u>차량운행질서 및 안전관리 지도·단속</u> 다. <u>법규위반차량 행정처분</u> 라. <u>불법주·정차지도단속 및 위반에 대한 조치</u> 마. <u>자동차의 압류등록 및 해제</u></p>	<p>제17조(소관사무)----- -----</p> <p>1. <u>상하수도사업소</u> 가. ~ 다.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p> <p>2. ~ 3. (현행과 같음)</p> <p>3의2. <u>녹지공원관리사업소</u> 가. <u>도시녹화 및 산림에 관한 사항</u> 나. <u>공원조성 및 공원내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u></p> <p>4. ~ 6. (현행과 같음)</p> <p>7. <u>차량관리사업소</u> 가. <u>차량행정·차량등록에 관한 사항</u> 나. <u>자동차관리 및 방치차처리에 관한 사항</u></p>
<p>부칙<2003.8.11 조례 제1965호></p> <p>① (생략)</p> <p>② (한시기구 적용시한) 시본청 <u>행정지원국</u> 주민자치과의 기구설치기한은 <u>2004년 6월 30일</u> 까지로 한다.</p>	<p>부칙<2003.8.11 조례 제1965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한시기구 적용시한) -----<u>총무국</u> -----<u>2005년 6월 30일</u> -----</p>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시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별표 1] 시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기관명	소재지
·	·	·	·
·	·	·	·
·	·	·	·
·	·	·	·
<u>부천시맑은물푸른숲사업소</u>	·	<u>부천시상하수도사업소</u>	·
·	·	·	·
·	·	·	·
<u>< 신 설 ></u>	·	<u>부천시녹지공원관리사업소</u>	<u>부천시 원마구 중동 1156번지</u>
·	·	·	·
·	·	·	·
·	·	·	·
·	·	·	·
<u>부천시교통지도사업소</u>	·	<u>부천시차량관리사업소</u>	·